보건복지부지정
국민안심병원
전주병원

KAKAOTALK
전주호남문고
QR코드 찍고! 친구등록 하고!
본점. 253-9400 / 전주대점. 221-9423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sjbnews.com

제5362호 대표번호 063-230-5700 2021년1월22일 금요일 (단기 4354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가 손실보상

새해 첫 의안은 감염병 파동에 휘말린 소상공인 구제조례
공중보건 시스템 재구축 방안 모색할 특위 구성안도 발의
160여개 공공 사회서비스기관 총괄할 재단 설립안도 제출

■ 전북도의회 1월 임시회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지자체가 코로나19 파동에 휘말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문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그에 필요한 소상공인 경영실태도 조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액 등은 향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은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이아이(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제방안은 한층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성환 의원(전주7)은 제안사유를 통해 "감염병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도 그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상공인 피해 복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특위 구성안도 발의돼 눈길이다.

가칭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지원특별위원회'로 명명된 특위는 꼬리에 꼬리를 문 인수공통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대표 발의자인 김명지 의원(전주8)은 "최근 들어 문제화된 신종 감염병들은 그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다 대규모 감염까지 유발시켜 지역사회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는 양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그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릴 전북도의회 전경. /새전북신문DB

아울러 가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안도 발의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설립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모두 160개 가까운 공공 사회서비스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지칭한다. 전북도는 올 7월 이를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민간단체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공 사회서비스기관은 모두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곧바로 재단 직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민간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밖에 도내로 이주한 고려인을 지원토록 한 조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토록 한 조례, 모든 유·초·중·고교는 지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한 조례 등 모두 20여 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됐다.

가부는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일 결정된다.

전북도 산하기관 올해도 임대료 인하

최대 50% 감면, 314개 입주사 혜택

올해도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입주사들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전북도는 21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10개 산하기관 모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각각 25~50%까지 정해졌다. 기관별론 전북개발공사 25%, 전북테크노파크 30%,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35%, 군산의료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각각 50% 등이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지난해 3월부터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지원해왔다. 현재 입주사, 즉 수혜자는 모두 314개사로 파악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도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개발 등과 맞물려 위기 극복의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며 "전라북도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3면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서 고민 깊은 전북 정치권

5면 유흥업소 업주들 "차라리 죽여라, 영업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기소된 현역 의원들 구원줄 되나

재판부 법 개정 취지 '반성적 고려', 검찰 '부당한 판결'
윤준병, 이상직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면소 가능성 커져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탈출구'로 떠올랐다. 개정법에 따른 첫 '면소' 판결 사례가 나오면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의원에 대해 "개정된 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범죄 구성력이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택

이상직

윤준병

재판의 주요 쟁점은 개정된 공선법 적용 유·무였다. 구(舊)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원)과 기존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구법을 적용한다면 최대 벌금 90만선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 1조2항에 의거해 면소 즉,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항은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또는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령이 개폐됐을 경우 적용된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존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은 반성적 취지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新)법의 입법 취지에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기존 법안과 그동안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측은 "(신법은)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거에 따라 금지대상에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환경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이번 1심 판결 사례만 놓고 보면 유사 사례로 법정에 선 현역 의원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된다. 실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 측도 종교시설 내 명함배부 혐의를 놓고 신법에 의한 '면소'를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터 "명함 배부가 이뤄졌던 교회 주차장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왔다. 지난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외부와 구별되는 구역이 없다면 건물 내부만을 종교시설 '안'으로 봐야한다"며 "더욱이 신법은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종교시설 옥내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법은 과거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윤 의원 사건도)신법이 적용돼야 맞다"며 면소판결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향후 유사 사건의 선고는 '예측불허'라는 평가를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신법에 대한 판단이 이번 재판부와 같다면 윤 의원에 대한 혐의도 1심 유죄와 달리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상직 의원이 종교시설 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면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양정선 기자